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1호

2024. 2. 2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42호 노인보호구역 지정고시(교동2통 외 1개소) ----- 2
- 삼척시 고시 제2024-4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2024-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7
- 삼척시 고시 제2024-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11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306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7
- 삼척시 공고 제2024-3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 18
- 삼척시 공고 제2024-31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4 - 42호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목적 : 삼척시 교동2동 외 1개소 마을회관(경로당) 주변 교통사고 안전예방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2.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읍·면	도로노선	대 상		지정구간			비고
		시 설	위 치	시점	종점	연장	
계	2개소 (2개노선)	(여가복지시설)	2개소			1.5km	
교동	도시계획 도로	교동2동 경로당	교동 412-17	교동 413-17	교동 362	0.3km	
노곡면	지방도 427호선	상마읍리 경로당	상마읍리 162-5	상마읍리 209-3	상마읍리 123-6	1.2km	

※위치도 : [붙임] 참조

3.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삼척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570-3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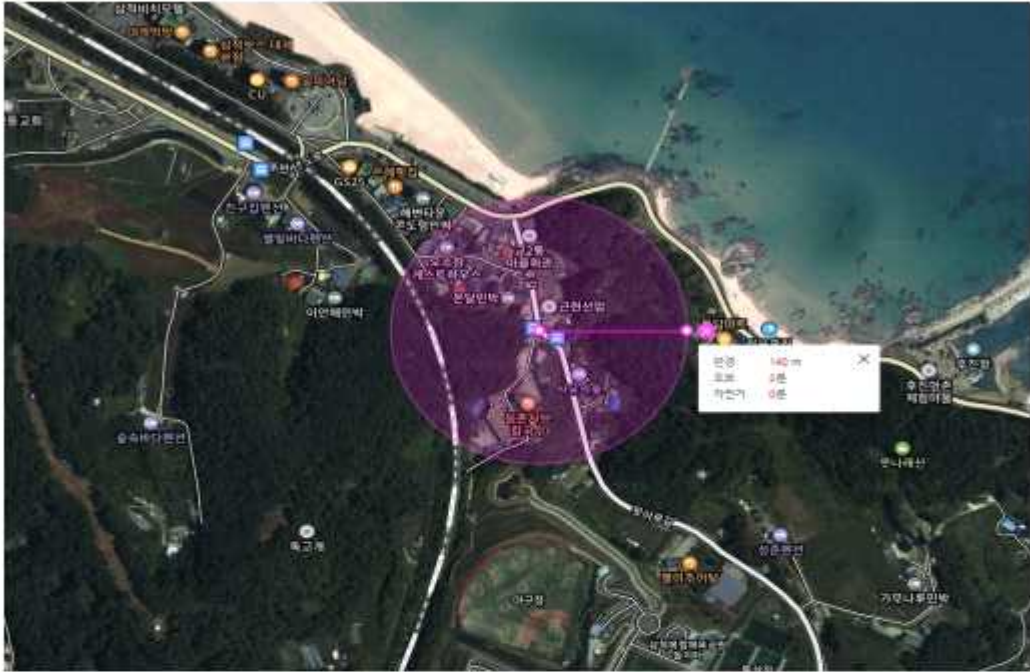
2024. 02. 19 .

삼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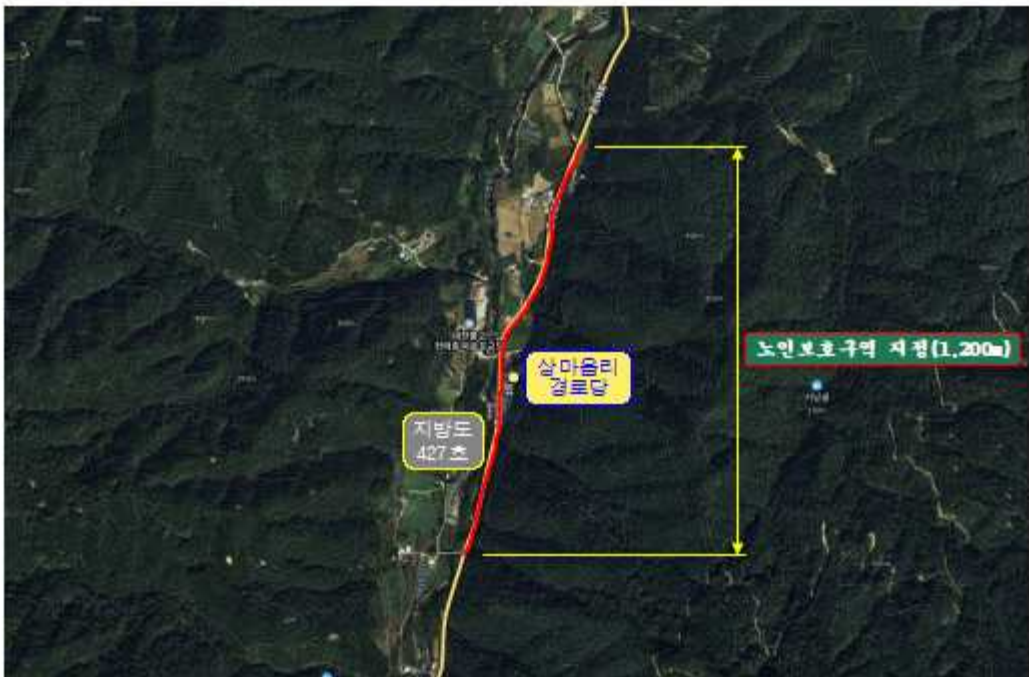


# 2024년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위치도

지정위치	<p>교통 경로당(교통 413-17), 지정구간 0.3km</p> <p>[ 시·종점 : 도시계획도로 (교통 413-17 ~ 교통 362 일원) ]</p>
------	---



<b>지정위치</b>	<b>노곡면 상마읍리 경로당(상마읍리 162-5), 지정구간 1.2km</b> [ 시·종점 : 지방도 427호 (상마읍리 209-3 ~ 상마읍리 123-6 일원) ]
-------------	---



삼척시 고시 제2024-4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10-1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10-1	2024022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도계리,상덕리) 복합활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10-5	2024022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도계리,상덕리) 복합활용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10-3	2024022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도계리,상덕리) 복합활용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양동 504-1, 504-1-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4-10, 504-11, 504-12, 504-13, 504-14, 504-15, 504-16, 504-17, 504-18, 504-19, 504-20, 504-21, 504-22, 504-23, 504-24, 504-25, 504-26, 504-27, 504-28, 504-29, 504-30, 504-31, 504-32, 504-33, 504-34, 504-35, 504-36, 504-37, 504-38, 504-39, 504-40, 504-41, 504-42, 504-43, 504-44, 504-45, 504-46, 504-47, 504-48, 504-49, 504-50, 504-51, 504-52, 504-53, 504-54, 504-55, 504-56, 504-57, 504-58, 504-59, 504-60, 504-61, 504-62, 504-63, 504-64, 504-65, 504-66, 504-67, 504-68, 504-69, 504-70, 504-71, 504-72, 504-73, 504-74, 504-75, 504-76, 504-77, 504-78, 504-79, 504-80, 504-81, 504-82, 504-83, 504-84, 504-85, 504-86, 504-87, 504-88, 504-89, 504-90, 504-91, 504-92, 504-93, 504-94, 504-95, 504-96, 504-97, 504-98, 504-99, 504-1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 (정상동)	20240222	신규부여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3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1048	20240222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6-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688-1	20240222	신규부여	20090626	방재단지 예정지 명칭 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고시 제 2024-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척시장**

##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호 : (주)하일 대표 신광식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 4층 421-1호(야탑동,엔즈빌오피스텔)

##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135-1번지 외 6필지
- 대지면적 : 16,864㎡
- 건축면적 : 6,731.4227㎡
- 연 면 적 : 64,614.6130㎡
- 사업규모 : 아파트 4동 및 부대시설 15동 / 359세대
- 평형별세대수 : 84㎡형 - 309세대, 98㎡형 - 47세대  
132㎡형 - 2세대, 147㎡형 - 1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사 업 비 : (당초) 132,000백만원  
(변경) 160,000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2. 06. 01. ~ 2024. 09. 30.

(변경) 2022. 06. 01. ~ 2026. 12. 31.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고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협의 조서

###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통 산1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호선) 사업
- 나. 명칭 : 삼척 교통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주)하일 [대표이사: 신 광 식]
-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 (아탑동)

4. 사업의 면적 규모

- 가. 사업의 면적: 2,532㎡
-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총 계획	금회 시행 계획	기참·총점	기능/ 사용형태	비 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9호선)	B=20m, L=418m	B=20m, L=113m (일부구간 시행)	대로3-5 교통100-5도 - 중로2-18 교통219-1도	집산도로 / 일반도로	기부채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일 : [기정] 2022. 6. 1. → [변경] 2024. 2. 1.
- 나. 준공예정일 : [기정] ~2024. 9. 30. → [변경]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권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계	총 7필지							
삼척시 교동	100-3	잡	233	106	강원 삼척시 근덕면 풍의계로 3362-***	김*화		
	100-5	노	3.802	114	국토해양부	국		
	722-4	천	4.662	406	국토해양부	국		
	722-6	대	147	85	강원 삼척시 근덕면 풍의계로 3362-***	김*화		
	739	노	3.356.1	121	삼척시	공		
	산136	임	3.669	974	경기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동 ****호	김*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 ***-*호	김*하*		
	산137	임	1.151	776	경기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동 ****호	신*식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29조에 따름(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 금회 사업구간 전체)

삼척시 고시 제 2024-4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척시장**

###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호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외 29필지
- 대지면적 : (당초) 26,095.0㎡  
(변경) 26,068.1㎡
- 건축면적 : 4,544.32㎡
- 연 면 적 : 127,208.45㎡
- 사업규모 : 아파트 6동 및 부대시설 13동 / 736세대
- 평형별 세대수 : 74㎡형 - 218세대, 84㎡형 - 320세대  
99㎡형 - 128세대, 114㎡형 - 70세대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36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비 : 207,7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21. 03. 08. ~ 2024. 02. 28.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 협 의 조 건

- 1.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중 협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검사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리 준공 검사 협의하고 사용 검사 후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협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 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 사업 시공 시, 측량 말뚝 보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타인의 재산 및 공익에 피해를 주었을 시, 시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고 제반 민원 처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협의)권자가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5. 협의 조건 미 이행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협의) 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6. **실시계획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협의) 절차를 거쳐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7. **이행보증금 제출 후, 인가·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2일

삼 척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8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협의 조서

###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나. 명칭 : 삼척시 정상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사업의 면적	노선 규모(m)	금회 시행 계획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3-5)	3,386㎡	B=32m, L=3,163m	B=32m, L=105m	육교 위치 조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계속)

가. 토지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필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계	총 5필지		14,268.4	3,386			
삼척시 정상동	347	토	9.957	1.928	건설부	국	
	354-2	토	73	73	건설교통부	국	
	457-7	토	3,521.4	795	삼척시	공	
	산25-23	토	717	538	강원 삼척시 근면면 교가리 6**	김*동	
					강원 삼척시 정상동 9*	김*열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리*반	김*용	
강원 삼척시 정상동 38*-*	신*갑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4-***	신*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강원 삼척시 경상동 34*-*	신*갑	
					강원 삼척시 경상동 산**	신*선	
					충북 단양군 대포읍 고양리 1**	진*락	
					강원 삼척시 경상동 2**	이*우	
					삼척시	공	
					기획재정부	국	
	354-1	대	2,259	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 4층(여의도동)	**부동산 신라(주)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2020. 12.

나. 준공예정일 : ~ 2024. 2. 2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29조에 따름(도시계획도로(대로3-5호선) - 금회사업구간 전체)

##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비행정청)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출근거

###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

### ■ 산출내역

- 가. 총사업비(공사비): 2,162,150,000원 (금 이십일억육천이백일십오만만원)
- 나. 이행담보금: 432,430,000원 (금 사억삼천이백사십삼만원)  
→ 총사업비의 20% :  $2,162,150,000 \times 20\% = 432,430,000$ 원

### ■ 납부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보증보험의 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 기간에 따름)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삼척시 공고 제2024 - 306호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 삼척시장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3. 처분대상

건축주	주소지	미송달 사유	위반건축물 주소	위반내용
이*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길 325 (우지동)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268번지	주택, 임시창고 무단건축 139.14㎡

- 4. 공고기간 : 2024. 2. 19. ~ 2024. 3. 4. (15일간)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6. 문의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6)

삼척시 고시 제2024-3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척시장

1. 목 적

침수위험 '나' 등급으로 지정된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주변에 상가 및 가옥이 산재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아 '가' 등급으로 상향 변경하고 당초 사업지구만 포함된 지정면적에 침수범위를 포함하여 지정면적을 확대 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m <sup>2</sup> )	
후진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번	침수위험	나	28,000	당초
후진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번	침수위험	가	147,000	변경

3.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5.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2. 23. ~ 2024. 3. 15.(21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라로 81(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라.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033-570-3886)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재해예방 대책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570-3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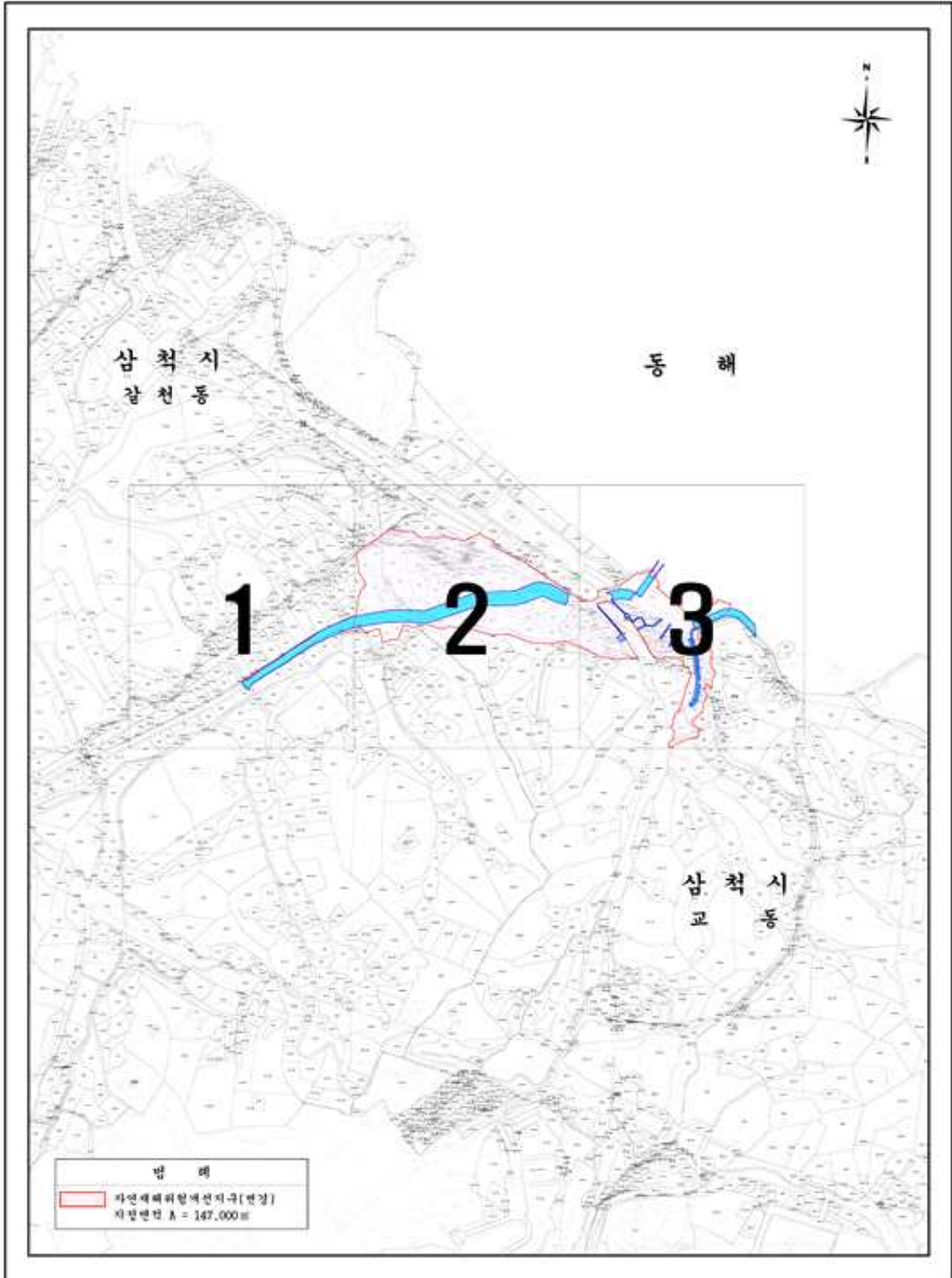
붙임 1. 일람도 1부.

2. 지형도면 고지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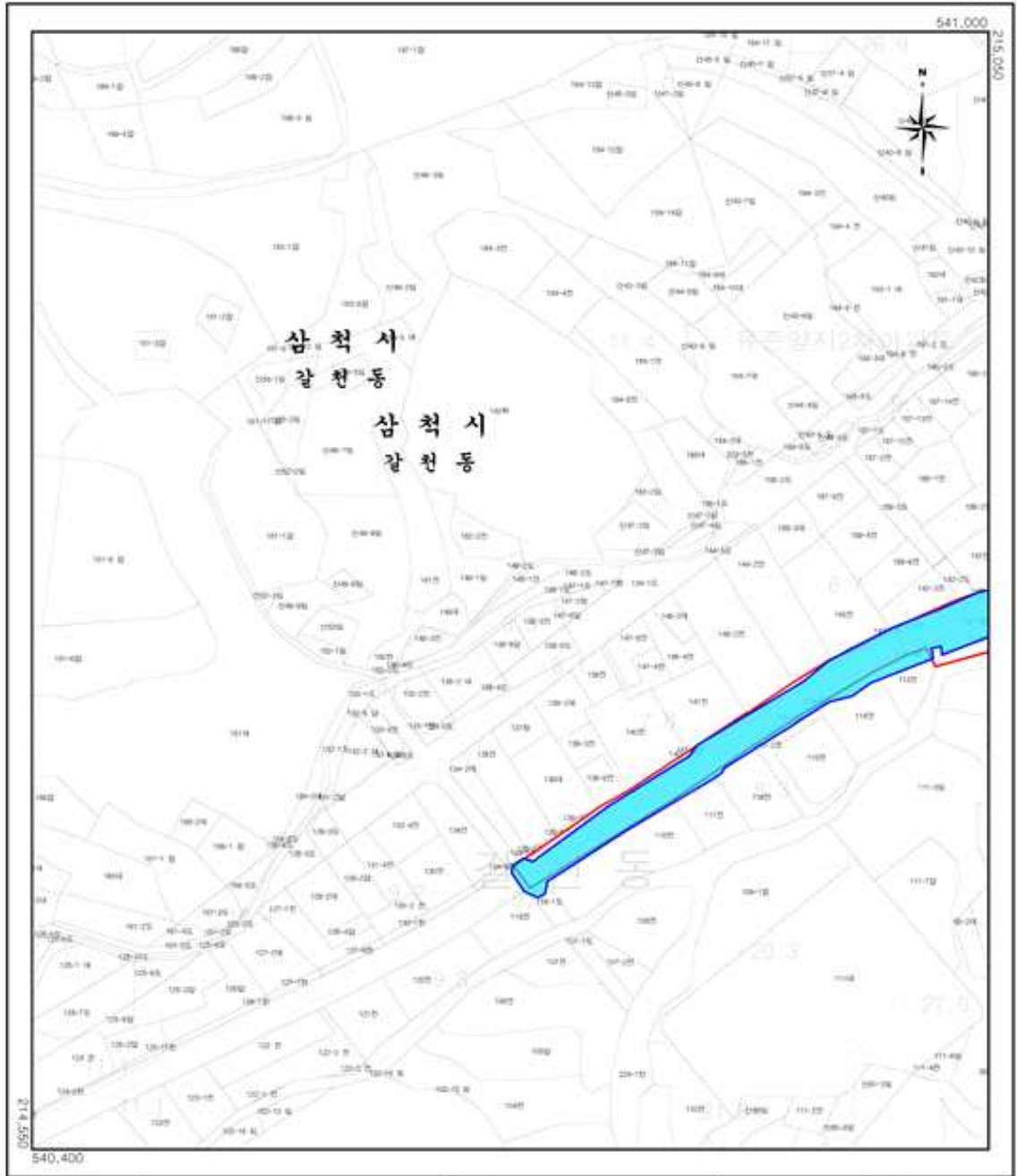
3. 의견제출서 1부. 끝.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람도

축척=1:4,000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1)



**<범 례>**

..... 행정구역선  
 [Blue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부)  
 [Red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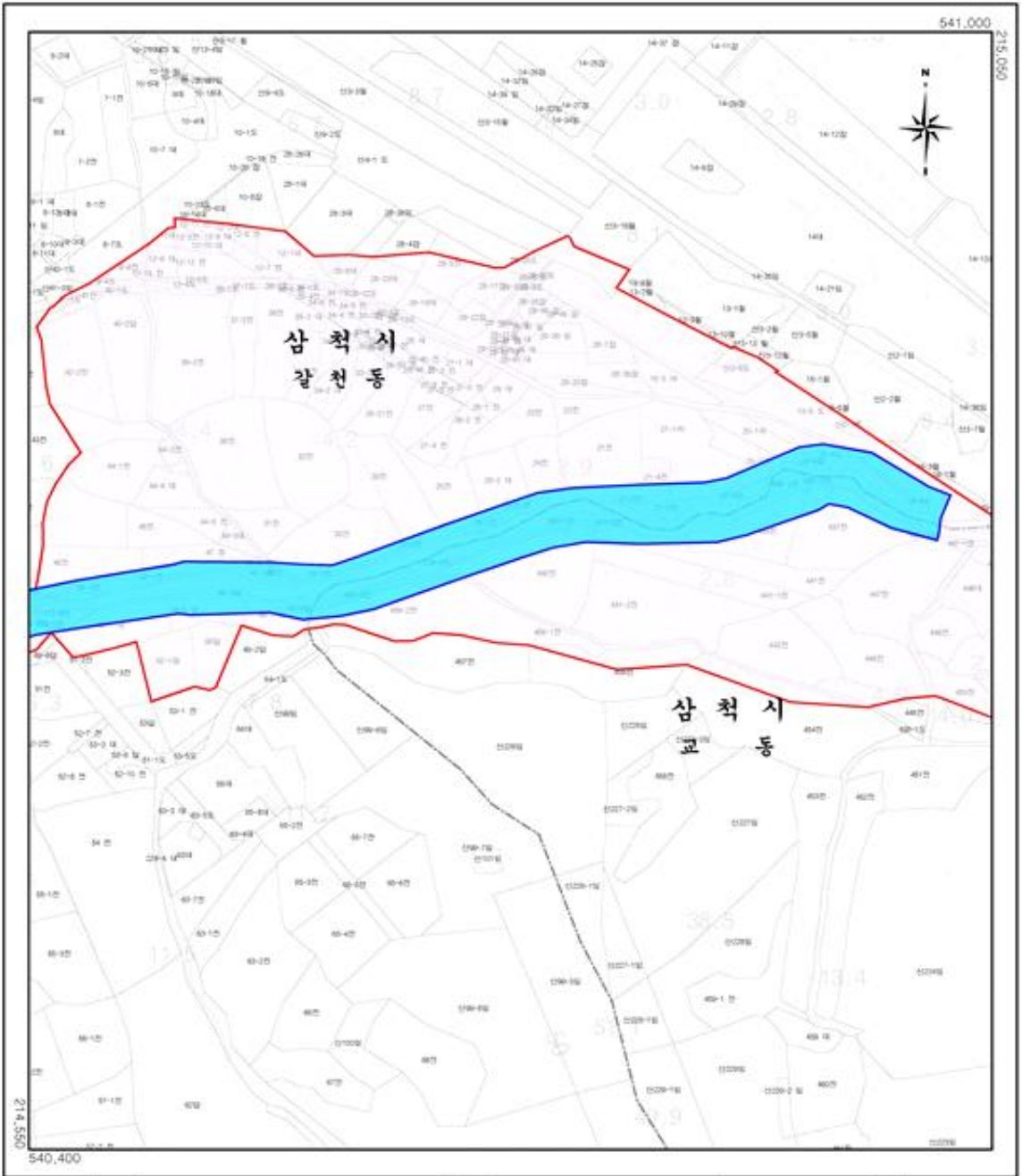
본지도는공공데이터를제공하며,본지도에의하여  
 규모이용정보관리체계상 공개됨  
 확 인 일 : 2024년 1월 1일  
 확 인 자 :

측 척 비 = 1:1,000

작성일자	삼척시장	작성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작성한소유 및발령자	삼척시장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2)



**<범례>**

- ..... 행정구역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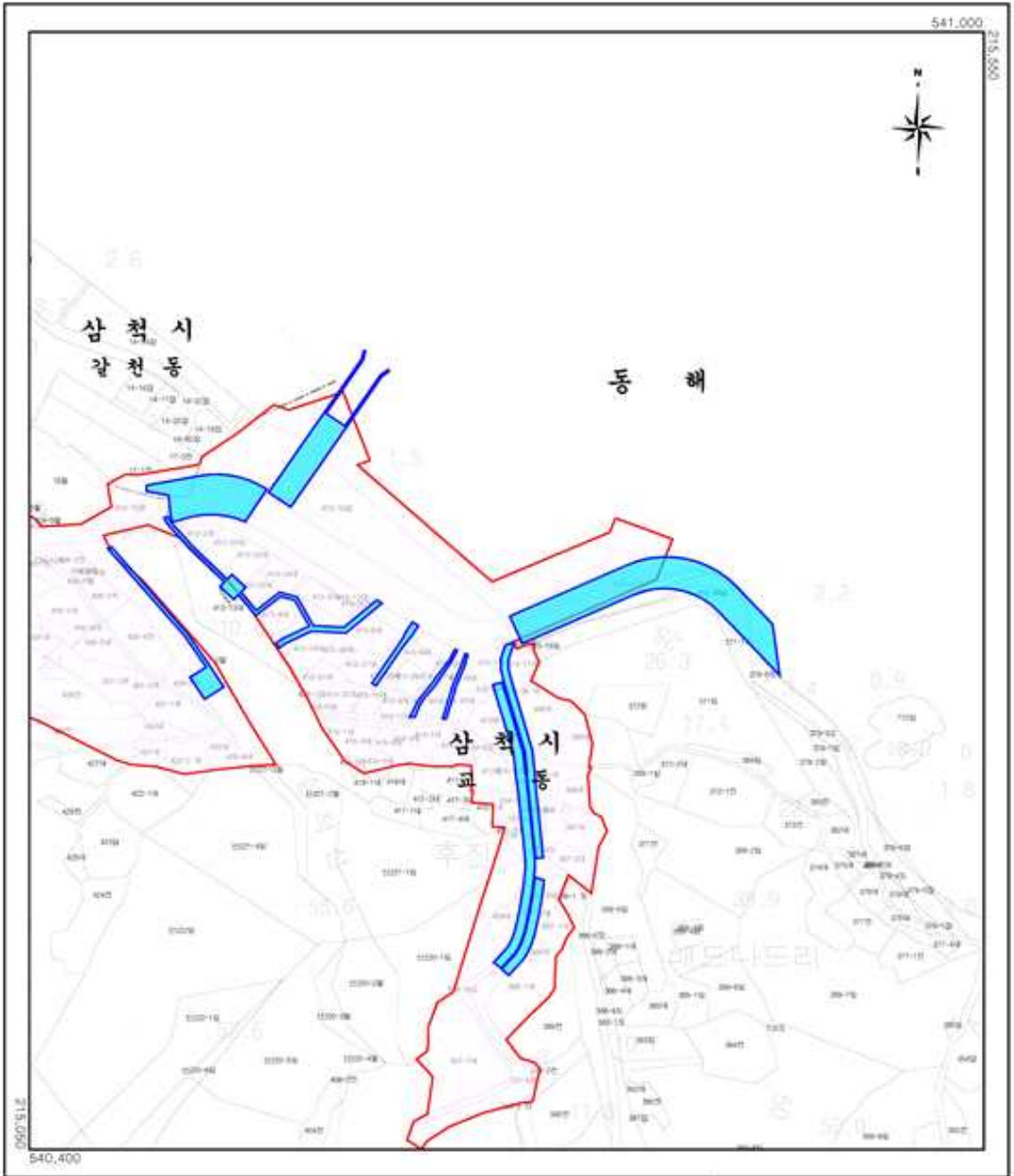
도시이동규제기본법 제8조제 2항  
 국토이용관리법령 제34조제 1항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측척 = 1:1,000

지정일자	삼척시장	지정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제작한 소유	삼척시장	발행일자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3)



**<범례>**

..... 행정구역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양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통)

도시이용규격이온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관리법제상 등재함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측척 = 1:1,000

작성일자	삼척시장	작성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제작권 소유 및 발행자	삼척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설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삼척시 공고 제2024-314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6.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4. 3. 7.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은 ○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1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97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연면적(62.62㎡)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0.

## 삼 척 시 장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59